

대외협력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2.12.19.

개정 2024.04.29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외협력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외협력센터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
2.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사업
3.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① 본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소속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업무를 시행한다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① 본 센터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위원회는 대외협력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대외협력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발굴
2. 국내·외 대학,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4. 국제협력강화 방안 연구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 5.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연구·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대외협력센터 직원으로 한다.

제9조(심의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0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